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6
----------	------

제출년월일 : 2012. 5.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 4. 5 공포)되어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기관(안 제3조)
-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6조)
- 마. 녹색제품 구매의무(안 제7조)
- 바. 녹색제품 구매 예외(안 제8조)
- 사. 판단 기준의 설정·관리(안 제9조)
- 아. 관내기업 지원(안 제11조)
- 자. 구매실적 등의 평가 등(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입법예고(2012. 3.30 ~ 4.20)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충주시(다음부터 "시"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충주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위한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시 의회사무국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기업

5.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다음부터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과 구매계획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다음부터 "구매실적"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매실적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을 직접 구매
2. 용역·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제8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와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관내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녹색제품 구매증진) ① 시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 확산에 필요 하면 시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체육단체,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 하는 교육·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구매실적 등의 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구매촉진시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생산자, 민간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